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1 항 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제 6 조의 제목 “일비지급기준”을 “일비지급”으로 하고 동조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 7 조의 제목 “여비지급기준”을 “여비지급”으로 하고, 동조 제 1 항 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하며, 동조 제 2 항 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지급표”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을 “의회소재지내 출장여비지급표”로 하고, 의장·부의장 지급액 “1일당 5,000원”과 의원 “1일당 4,500원”을 각각 “1일당 6,5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 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원	2 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 비고: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부산직할시 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표(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25 나등급 25 다등급 25 라등급 25	가등급 130 나등급 90 다등급 72 라등급 62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등 정액		가등급 20 나등급 20 다등급 20 라등급 20	가등급 114 나등급 74 다등급 55 라등급 46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의 원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동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동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동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5 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u>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u> 로 구분한다.		제 5 조(.....) ①		
② 생 락		② 현행과 같음		
제 6 조(<u>일비 지급기준</u>)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u>30,000원</u> 으로 한다.		제 6 조(<u>일비지급</u>).....		50,000원.....
제 7 조(<u>여비지급 기준</u>)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u>국내여비 지급기준표</u> 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u>현지교통비</u> 를 지급한다.		제 7 조(<u>여비지급</u>) ①		<u>국내여비지급표</u>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u>국외여비지급 기준표</u> 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u>국외여비지급표</u>

별표신 · 구대비표

현행				
[별표 1]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 (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갑5,000	갑17,000	갑11,000	800
부의장	을4,500	을15,000	을 9,500	
의원	갑4,500	갑14,000	갑10,500	800
	을4,000	을11,500	을 9,000	

비고: 현조례와 같음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가동급 100	가동급 53		
	나동급 79	나동급 46		
	다동급 60	다동급 40		
	라동급 40	라동급 33		
의원	가동급 83	가동급 48		
	나동급 66	나동급 42		
	다동급 50	다동급 36		
	라동급 33	라동급 30		

개정안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6,500	20,700	11,000	
부의장				
의원	6,500	16,200	10,500	

비고: 개정조례안과 같음

[별표 2]				
국외여비지급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가동급 130	가동급 107		
	나동급 90	나동급 78		
	다동급 72	다동급 58		
	라동급 62	라동급 49		
의원	가동급 114	가동급 81		
	나동급 74	나동급 59		
	다동급 55	다동급 44		
	라동급 46	라동급 37		

별표신 · 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의회소재지내출장시여비지급기준 (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table border="1"> <tr> <th>구</th><th>분</th><th>지</th><th>급</th><th>액</th></tr> <tr> <td>의</td><td>장 · 부 의 장</td><td>1</td><td>일당</td><td>5,000</td></tr> <tr> <td>의</td><td>원</td><td>1</td><td>일당</td><td>4,500</td></tr> </table> 비고: 생 략		구	분	지	급	액	의	장 · 부 의 장	1	일당	5,000	의	원	1	일당	4,500	[별표 3] 의회소재지내출장시여비지급표 (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table border="1"> <tr> <th>구</th><th>분</th><th>지</th><th>급</th><th>액</th></tr> <tr> <td>의</td><td>장 · 부 의 장</td><td>1</td><td>일당</td><td>6,500</td></tr> <tr> <td>의</td><td>원</td><td>1</td><td>일당</td><td>6,500</td></tr> </table> 비고: 현행과 같음			구	분	지	급	액	의	장 · 부 의 장	1	일당	6,500	의	원	1	일당	6,500
구	분	지	급	액																														
의	장 · 부 의 장	1	일당	5,000																														
의	원	1	일당	4,500																														
구	분	지	급	액																														
의	장 · 부 의 장	1	일당	6,500																														
의	원	1	일당	6,500																														